

제14회 관광벤처사업 성장부문 모집 공고

우수한 관광사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발굴 및 지원을 목적으로 「제14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에 참여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2월 1일

I 모집개요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 사업목적** : 창의적인 관광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여 한국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원대상** : 창업 후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인 성장 기업
- 모집유형**

모집유형	개념	예시
관광체험 서비스	정보탐색, 이동, 숙박, 체험 등 관광여정에 플랫폼 기반의 예약·결제 서비스 제공 등 혁신적 기술로 관광편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기반 여행 큐레이션 서비스 • 여행관련 물품 대여 및 가격비교 • 관광상품(숙박, 항공 등) 예약 플랫폼 • IoT 짐배송, 키오스크 서비스 등
실감형 관광콘텐츠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여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 및 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운영에 관련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마여행 상품(한류, 미식, 반려동물, 공연, 캠핑, 쇼핑, 의료관광, MICE 등) • AR/VR, 메타버스 등 활용 관광콘텐츠 제작 •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등
관광인프라	오프라인 기반시설 또는 물적 자원을 핵심 기반으로 하는 관광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마공원, 목장·농원 등 자원을 활용한 체험 상품 및 서비스 • 공유자동차, 킥보드 등 이동수단 및 시스템
관광딥테크	디지털화, 기술 지원을 통해 관광 업계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B2B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사자원관리(ERP), 고객관리(CRM), 숙박운영 관리(PMS), 블록체인, SaaS 기반솔루션 등 활용 관광기업 경영 관련 기술 제공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위치정보시스템(GPS) 등 데이터 기술 활용 B2B 서비스 등

- ① 사업 아이템 해당 유형을 선택하여 공모전 신청
- ② 융·복합 아이템일 경우 모집유형 중 주력부문 선택
- ③ 모집유형 구분 없이 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지원내용** : 사업화지원금 및 특화 프로그램, 관광벤처확인증(장관명의)
- 지원기간** : 협약 후 7개월 이내(2023년 5월 ~ 2023년 11월 예정)
- 선정규모** : 35개 내외

□ 지원자격

- (성장부문 기업)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창업자로 사업공고일(2023.2.1)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창업기업** : 사업개시일 부터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3호)
* 창업일이 '16.02.01. ~ '20.01.31. 해당되는 창업기업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 **공동/각자대표** : 대표자 전원이 '지원자격'에 해당,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함
- **복수 사업자** :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모두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해당자

- (패스트트랙 기업) 업력 3년 이하의 기업이라도, 초기부문에 해당하는 한국관광공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발되어 기 협약을 완료한 자

- **관광벤처공모 재도전부문** : 2020년(11회) '기창업자(창업 3년 이내)' 자격으로 선발된자
※ 재도전부문 '예비창업자' 자격으로 선발된 자는 지원 불가(초기관광벤처로 지원가능)
- **관광벤처공모 초기부문** : 2021년(12회), 2022년(13회) 초기부문 선정자
- **관광엑셀러레이팅 기업** : 2020-2022년 선정기업 중 업력 3년 이내 기업인 경우, 관광벤처 초기/성장부문 중 선택 지원 가능

□ 지원 제외대상

- 본 모집요강에서 정한 지원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
- 관광분야 외 사업아이템으로 공모전에 신청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①일반유희주점업 ②무도유희주점업 ③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
- 대상업종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조

- 공모전에 신청한 동일 아이템으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서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선정되어 지원받을 예정인 자

◆ **예외조건**

- 공모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동 사업 지원가능
* 단, 기존 수혜사업 종료 후, 공사 지원금 사용 가능
- 지자체 단독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 한국관광공사 지원사업 중복수혜 범위

◆ **관광벤처사업 공모 지원가능 범위**

- 최근 3년간('20~'22) 관광벤처 공모에 참가한 수혜자는 아래기준으로 신청가능
 - **예비벤처** : 2020년(11회), 2021년(12회), 2022년(13회) 선정자 ☞ 초기 지원가능
 - **초기벤처** : 2020년(11회), 2021년(12회), 2022년(13회) 선정자 ☞ 성장 지원가능
 - **성장벤처** : 지원불가

◆ **한국관광공사 창업사업화지원 중복사업 범위**

- 관광기업혁신바우처, 관광엑셀러레이팅, 관광글로벌챌린지프로그램, 관광플러스팁스, 관광두레, 관광기업지원센터 지원사업(부산,인천,대전세종,경남,광주,울산,경북,전북), 이을프로젝트, 여행업계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등
- 사업화지원금 외 상금, 인건비, 사무공간 지원 등의 경우는 신청 가능

- 기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 또는 기 출시된 제품·서비스 등을 도용하여 사업아이템으로 신청한 자
- 신청일 기준 휴업중인 기업
- 공고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공사 재직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예외조건 <공모 접수 마감일 '23.3.3 기준, 증빙자료 제출필수>**

- ①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②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자

○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 **예외조건 <공모 접수 마감일 '23.3.3 기준, 증빙자료 제출필수>**

- ①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②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자
- ③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 기타 주관기관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근로기준법 위반, 공정거래행위 위반, 보조사업 수행배제 처분 등

III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총 7개월 이내 (협약 체결일 ~ '23.11월 예정)

□ **지원내용** :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업화 지원금 및 특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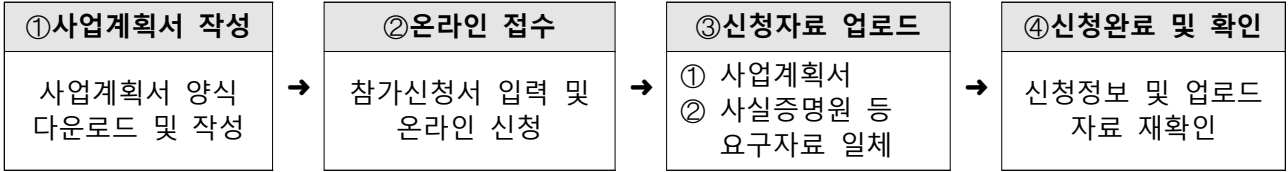
구분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지원금 규모 : 평균 6.6천만원 (최대 1억원 ~ 최소 5천만)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화지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총사업비 구성 : 사업화지원금 + 자부담(지원금의 20% 현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총사업비(예)</th> <th>사업화지원금</th> <th>자부담(현물)</th> </tr> </thead> <tbody> <tr> <td>120백만원</td> <td>100백만원</td> <td>20백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부담 ▪ 사용기간 : 협약기간 동안만 집행가능(~'23.11월) ▪ 사용기준 : 광고선전비, 인건비, 외주용역비 등 붙임 참고 	총사업비(예)	사업화지원금	자부담(현물)	120백만원	100백만원
총사업비(예)	사업화지원금	자부담(현물)				
120백만원	100백만원	20백만원				
특화 프로그램 (빌드업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교육 : 창업자 역량강화를 위한 분야별 교육 ▪ 컨설팅 : 벤처기업-공사-컨설턴트 3구조 밀착 관리 ▪ 네트워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2G 네트워킹) 공사 및 지자체 사업 연계를 위한 B2G 네트워킹 프로그램 - (Final 데모데이) 관광벤처 대상 Seed, Pre-A 위주 1:1 투자 매칭 지원 - (알럼나이) 1~14회 관광벤처기업들 간 협업을 위한 알럼나이 ▪ '컴퍼니빌더(Company-Builder)' 프로젝트 : 5개기업을 선정하여 글로벌 테크기업, 국내 여행 플랫폼 등과의 1:1매칭 및 밀착관리로 컨설팅, 투자유치 지원 ▪ 성과평가 : 20여개 우수기업 상장 시상 및 시상금 지급 					
홍보·판로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마케팅 : 컨설팅, 광고지원(디지털 및 옥외 등),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연중 지원 					
다자간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넥트(CONNECT) : 관광벤처 다자간 협업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기업, 단체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관광벤처기업 서비스 및 상품혁신의 기회 제공 * (4대 협력분야) 글로벌 시장진출, 지역현안 해결, 기술협력, 성과공유 ▪ 관광기업 이음주간 : 데모데이, 1:1밋업 등을 통한 관광벤처기업과 투자자, 지자체, 글로벌 기업간 소통과 교류의 장 마련 					
투자유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선정기업은 문체부에서 조성한 「관광기업 육성펀드」의 투자대상에 포함 					
성장관광벤처기업 자격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관광벤처기업 자격 부여(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 '관광벤처확인증' 수여 * 갱신심사 통과시 성장관광벤처기업 자격 2년 연장 					

IV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23년 2월 1일(수) ~ 3월 3일(금) 14:00시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contest.tourbiz.or.kr), 우편접수 불가



□ **1차 제출서류(접수마감일, 3월 3일까지)**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참가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	공모전 신청 웹 사이트 (contest.tourbiz.or.kr)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제출(PDF 파일로만 제출)	
사업계획서 및 참고자료		※ 공사 제공양식 준수	
업력 증빙 서류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한 증명원 을 스캔하여 온라인 제출 ※ 유의사항 : 발급일자는 반드시 '23.2.1 이후. 온라인 발급 시 3시간 내외 소요되어 접수마 감 전 사전 준비요망 ①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②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중 요- 총사업자등록내역에 기재된 대표자의 ①모든 창·폐업이력 정보 온라인 입력 및 ②업력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PDF파일로 필수제출)
	가. 창업이력이 있는 경우 ① 모든 계속사업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②비영리조합의 경우 '고유번호증' 등 ③공동(각 자) 대표일 경우 각대표별 세부증빙 모두 제출		
	나.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모든 폐업내역의 '폐업사실증명원'		
패스트 트랙 해당자	별도 제출서류 없음	'사업계획서' 상 패스트트랙 체크	
가점 서류 (해당자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지역가점)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스캔하여 사업계획서 별첨에 첨부	사업계획서의 별첨으로 제출
	주민등록등본 (청년우대)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스캔하여 사업계 획서 별첨에 첨부	
	벤처기업확인증 (벤처확인기업)	신청기업의 '벤처기업확인증'을 스캔하여 사 업계획서 별첨에 첨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경제조직)	신청기업의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스캔하여 사업계획서 별첨에 첨부	

□ 2차 제출서류(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4월 7일까지)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2차 발표자료	공사 제공양식 준수(PDF 파일 제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발급된 것만 인정 ※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제출일 기준, 유효한 증명서로 서류상 미체납 사실이 없어야함	
창업유지확약 동의서	공사 제공양식(PDF 파일로 제출)	
공동대표 사업참여 동의서	공사 제공양식(PDF 파일로 제출)	공동대표 체제의 기업일 경우
주주명부	자유양식	법인사업자에 한하여 제출
근로기준법 준수 확인서	공사 제공양식(PDF 파일로 제출)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중소기업지원사업 정보활용동의서	공사 제공양식(PDF 파일로 제출)	

□ 신청 시 유의사항

- 관광관련 사업아이템으로 직접 수익사업이 가능한 자만 참가 가능
- 복수 사업자의 경우 공모전 신청 시 관광관련 사업목적을 수행할 3년 초과 7년 이내 사업자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추후 변경불가. 단, 패스트트랙 창업기업 예외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점만 신청 가능하며, 지점 · 지사 · 부설 연구소 등은 참여 불가
- ‘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타 정부부처 창업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가능(타 사업 동시 수행 불가)
 - * (창업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23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지원 사업 중 창업아이템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 동시 선정 시, 협약체결일 이전에 1개 사업 선택하여야 하고, 협약을 체결한 1

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

- 공모전 신청자는 모집요강 및 붙임의 사업화자금 사용기준을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함
- 참가신청 및 제출자료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신청마감일은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 신청 권장
- 사업계획서는 접수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양식만 허용되며, 임의 양식을 사용하거나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공모전 신청은 창업기업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상의 모든 항목은 평가점수에 반영되며, 작성항목 중 미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평가결과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접수일 마감까지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 된 자료에 한하여 인정되며, 미제출 시 평가대상 제외 및 가점 불인정
- 각종 서류 제출 후 접수 및 서류 첨부 여부 반드시 확인. 미확인으로 접수 및 제출 서류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심사·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에도 제출서류가 허위로 발각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 · 표절 · 도용하거나 대필하는 경우 사업 참여 불가,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짐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종료 후 파기
- 제출서류는 발급일자 기준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23.2.1.~)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절차** : 자격검토→1차 서류평가→2차 발표평가(1.8배수)→3차 현장실사
- **평가기준** : 사업의 창의성, 시장 및 사업모델, 사업전략, 지속가능성, 리더십, 관광산업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우대사항** : 가점 항목 해당 시 최대 4점 부여

< 가점항목 및 점수 >

가점항목	지원내용	점수	비고
지역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 단, 소재지 신고일자가 '23.02.01' 공고일 전까지인 경우에 한함 * 참가신청서에 기재한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해당지역일 경우만 인정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 	1점	최대 4점
청년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인 청년창업자로 주민등록등본 상 '83.02.02 이후 출생자 * 관련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11 	1점	
벤처기업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기간 내 「벤처기업확인서」 보유 기업 * 관련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1점	
사회적경제조직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기간 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보유 기업 	1점	

* 1차 서류평가에 한하여 적용되며, 항목별 증빙서류 미 제출 시 가점 불인정

□ 최종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 확정
- * 평가결과 및 사업비 활용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화 지원금 차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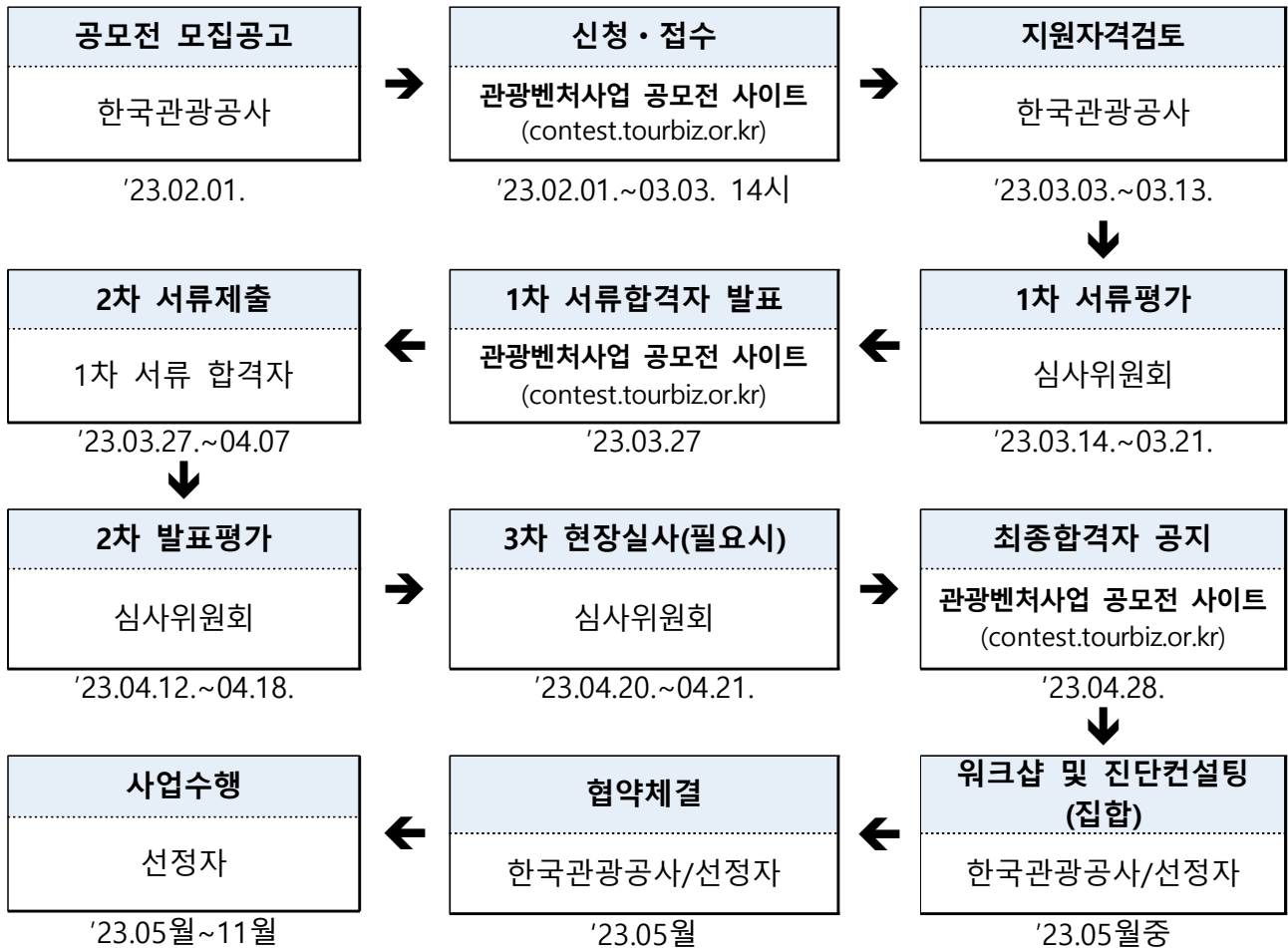
□ 평가제외 대상

- 제출서류 양식 미 준수 및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타 부문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접수하는 경우(예시: 예비 또는 초기관 광벤처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성장관광벤처에 접수하는 경우)
- 2차 발표평가 시 참가신청서 상의 대표자가 발표하지 않은 경우
-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또는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 공모전 평가 및 선정 프로세스 >

구분	대상자	주요내용
지원자격검토	공모전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성장관광벤처 지원자격 등 검토 - 사업계획서 등 표준양식 준수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계속사업자)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폐업사업자) 폐업사실증명원 등 증빙서류 업력사항 검토
1차 서류평가	지원자격검토 합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식 : 신청자 사업계획서 서류심사 ▪ 평가기준 : 창의성, 시장 및 사업모델, 사업전략, 지속가능성, 리더십, 관광산업 연관성 등
1차 합격자 공지 및 추가서류 제출	1차평가 합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발표평가 준비 ▪ 체납사실 등 검토 - 납세증명서, 창업·유지확약 동의서, 공동대표 사업참여 동의서, 법인사업의 경우 주주명부, 근로기준법준수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활용동의서
2차 발표평가 (1.8배수)	1차평가 합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식 : PT발표 및 질의응답 * 참가신청서 대표자만 허용, 팀원 1명 배석가능(참석자 신분증 지참) ▪ 평가기준 : 창의성, 시장 및 사업모델, 사업전략, 지속가능성, 리더십, 관광산업 연관성 등
2차 합격자 공지 및 현장심사 진행준비	2차평가 심사위원회 지정기업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상의 관광상품·서비스 평가를 위한 직·간접 체험 등 제공 준비
3차 현장심사	심사위원회 지정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발표평가지 발표내용과 실제 사업내용과의 일치 여부, 실제 사업 영위여부 등을 바탕으로 관광벤처기업 선정 적격/부적격 여부 심사
최종선정	최종 합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격자 심의 후 최종 선정자 확정

□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신청문의

- 문의처 :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운영사무국
- 연락처 : 02-6953-1310
- 이메일 : tourbiz_contest@knto.or.kr

□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유의사항

- 본 공모전의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사업실행계획 등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 성장 관광벤처부문 선정기업은 협약종료 2개월 이내 반드시 관광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함
- 선정자는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함 *지정된 은행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창업지원사업 중복참여 및 성장벤처 지원자격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창업지원사업 관련 법령 ◆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우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벌금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정부지원금 유용 및 편취 등 사업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협약취소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 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
- 고의 거짓 등의 방법을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음

□ 기타 안내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광벤처사업 운영지침'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법령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공모전 운영사무국 문의 시 안내받은 의견은 참고사항이므로 모든 사업지원 희망자는 반드시 본 공모요강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종 응모해야 하며, 운영사무국은 응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붙임

사업화 자금 사용기준

구분		집행기준	비고
재료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수량 구매가능 	각 비목은 총 재무지원금의 30% 초과 집행 불가
외주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제품 제작을 위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는 용역비 · 선금인정(최대 50%, 이행보증증권 혹은 지급각서 必) 	
유형자산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용 가능한 기계, 설비, 비품 등을 구매하는 비용 · 협약종료 1개월 이전까지 납품 완료건에 한정 · 생활가전,통신기기,일반사무용품 구입 불가 · PC 및 노트북은 신규인력 채용 시 인당 1개 한정 · 건물, 토지, 부대시설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비용집행(시설비, 인테리어비 등)은 제한 받을 수 있음 	
무형자산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산권, 특허, SW등록 저작권 등 출원·등록 경비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채용 직원 인건비 인정 (인당 월 250만원 한도) · 사업자부담 4대보험료 지원불가 · 대표자 및 친족 등 지급불가 	총 재무지원금의 50% 초과 집행 불가
지급수수료	기자재 임차비	· 기기, 장비, SW 라이선스 임차료 등, 협약기간 내 인정	
	공간 임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보육료 형태 임차료 집행 불가 · 주택 및 근무좌석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공유오피스 불가 	
	시장반응조사비	· 시장반응 확인 및 홍보를 위한 체험비,입장료,가이드비, 참가자 보상비 등 인정	
	전시회참가비	· 등록비, 부스임차비, 참가비, 장치비 등 인정	
	법인설립비	· 법인설립을 위한 법무 수수료	
	회계감사비	· 공사 지정 회계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비용	
	세무기장료	· 세무 기장 수수료 지원	월 20만원 한도
여비	해외여비	· 아이템 고도화, 홍보마케팅 등을 위해 해외 출장 시 집행 비용 (이코노미 기준 해외항공비 실비만 지급)	
광고선전비	홍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업), 영상물, 리플릿, 광고게재 등 비용 · 배포용 기프트콘 등 경품 집행불가 	
	팸투어비	· 언론홍보 및 유관기관 대상 홍보를 위한 팸투어 실행사 소요비 지원	

※ 세부 내용 및 기준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